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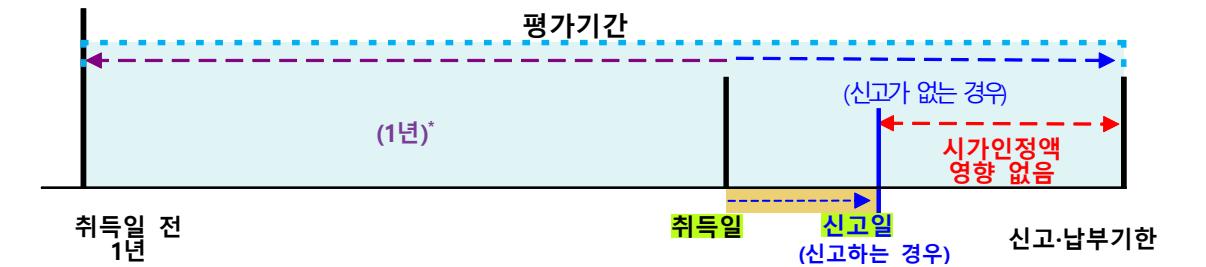
1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유사부동산등* 평가기간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취득일 전 1년 ~ 신고·납부기한의 만료일 * 평가기간 이내에 면적, 위치, 종류, 용도,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	<input type="checkbox"/> 평가기간 보완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취득일 전 1년 ~ 신고·납부기한의 만료일 ⇒ (기한 내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)

□ 개정내용

- 납세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의 종료 시점을 신고일로 개선·보완
 ※ 「상증세법」(영 §49④)상 유사재산의 시가 판단의 경우에도 평가기간 내의 신고일이 기준
 - 납세자가 신고 당시 시가인정액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에 발생한 매매사례 등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함

(개선) '유사부동산등'의 평가기간 개선·보완



□ 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

|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| 지방세법 부칙 제3조(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